

Media Issue Report

미디어 이슈 리포트

2026년 2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을 위한 해외 규제 동향

진민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II
미국: 플랫폼
책임 강화 시도와
수정헌법의 제약

III
영국: 플랫폼
'주의의무'와
사전적 위험관리
중심의 온라인
안전 규제

IV
프랑스: 국가
주도의 연령 기준
설정과 디지털
이용 환경 재구성

V
호주: 공중보건
의제화와 행정
집행 중심의
플랫폼 규제

VI
각국의
스마트폰·SNS
규제 비교 및
시사점

I. 들어가며

-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되었으며, 학습과 소통, 여가, 정체성 형성 전반을 매개하는 핵심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음. 또래 관계는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지되고, 정보 탐색과 여가 소비는 알고리즘이 배열한 피드를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는 과도한 사용이 집중력 저하, 수면 불안정, 정서적 어려움 등과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즉각적 보상과 지속적 추천으로 구성된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과 맞물려 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이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절제력 부족을 넘어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
-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이용을 법·제도 차원의 개입 대상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최근 규제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령 보호 장치,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본 설정값 등 플랫폼 설계 요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동시에 부모 지원과 학교 교육을 병행하여, 규제와 역량 강화를 결합하는 접근이 확산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2024년 이후 관련 입법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책은 학교 공간 내 행위 통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플랫폼 설계 책임, 부모 지원 체계, 통합적 온라인 안전 인프라 구축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임. 방과 후와 가정, 이동 시간 등 학교 밖 환경을 고려할 때, 교실 내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에 본 리포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이용 규제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책 구조 속에서 제도화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특히 플랫폼 책임 강화, 연령 기준 설정, 행정 집행 구조, 부모 및 학교 지원 체계의 결합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정책 논의에 필요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 미국: 플랫폼 책임 강화 시도와 수정헌법의 제약

- 미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과의존 문제는 오랫동안 가정 내 양육 방식과 개인의 자기조절 문제로 이해되어 왔음.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인식의 변화가 시작됨. 정신건강학, 미디어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축적된 실증 연구, 특히 청소년 우울·불안, 자살 사고 증가와 스마트폰·SNS 사용 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단순한 '사용 시간'보다 플랫폼의 설계 방식과 노출 구조가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지적해 왔기 때문임(Weigle & Shafi, 2024)

- 대표적으로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는 경향을 보임(Ruiz et al, 2024).
- 이러한 설계는 성인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취약한 아동 ·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플랫폼 이용을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부각되었음.
- 그 결과 미국에서는 과의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시간 관리 실패'가 아니라, 위험이 내재된 디지털 환경에 아동 ·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로 재정의되기 시작함
-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미국의 정책 대응은 국가가 아동 ·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즉 ①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규제 장치와 ②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환경과 이용 방식을 실제로 조율 ·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페어런팅 정책을 병렬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임.
- 이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제도적 특성과도 맞물려,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 교육 자원이 결합된 분산형 정책 구조라는 특징을 가짐. 이러한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2024년 7월, 연방 차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아동 · 청소년 온라인 안전법(KOSA, Kids Online Safety Act) 이 있음. KOSA는 온라인상 17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하 알고리즘)'을 제한하며 부모가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KOSA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 명시적인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있음.
 - '주의의무'란 온라인상 아동이 입는 피해에 일정 요인을 기여한 플랫폼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제102조).
 - 여기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입는 피해에는 우울과 불안, 섭식장애, 자살 · 자해 위험, 강박적 사용 패턴, 아동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에 관한 콘텐츠 등이 포함됨(제102조).
- KOSA의 핵심적인 특징은 콘텐츠 규제를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에 개입한다는 점임. 법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과 같이 사용 시간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기능을 중독적 설계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
 - 특히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알고리즘 추천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온 기존 플랫폼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조치로, 아동 · 청소년에게 추천을 거부할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KOSA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통해 부모의 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제103조). 부모는 자녀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 · 통제할 수 있고, 자녀의 온라인 사용 시간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시간뿐 아니라, 구매 및 거래에 관한 설정까지 제한할 수 있

음. 여기서 핵심은 부모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개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기술적·제도적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임

- 다만 KOSA는 ‘유해한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여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특히 LGBTQ 청소년 정보 접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됨(Villarreal, 2025.05.15). 현재까지는 최종 제정 단계에 이르지 않아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소송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함.

- 연방 차원의 KOSA 논의와 병행해, 주(州) 차원에서도 ‘연령 확인·부모 동의’ 또는 ‘중독적 설계(알고리즘 피드) 제한’을 앞세운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 다만 이 흐름은 곧바로 헌법(특히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 익명성, 과잉규제 여부라는 암초를 만나, ‘입법-소송-집행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임

- 먼저, 일부 주는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16세(또는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는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법을 추진해 왔음. 유타, 조지아 등에서 이런 유형의 법을 상정했는데,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광범위한 계정 제한과 신원 확인 요구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함. 그 결과 조지아의 경우, 시행을 앞두고 연방 법원이 가처분을 내린 바 있음(Kramon, 2024, 10.01).

- 계정 자체를 막는 방식이 헌법적 저항에 자주 부딪히자, 규제의 초점을 ‘중독적·개인화 설계’로 이동시키는 주들도 등장함. 뉴욕주는 2024년 청소년에게 개인 맞춤형(알고리즘) 피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등 예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을 통과시켜(일명 SAFE for Kids 관련 입법 패키지) ‘시간·행위 통제’가 아니라 노출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접근을 강화함¹⁾.

- 주 단위 입법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위헌(또는 집행정지) 판단도 함께 누적되고 있음. 예컨대 아칸소의 ‘소셜미디어 연령 인증’ 입법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거론됨(Harvard Law Review, 2025)

- 그렇다고 모든 주의 규제가 동일하게 ‘무력화’되는 것은 아님. 미시시피의 경우에는 ‘연령 확인’ 법을 둘러싼 다툼에서, 연방대법원이 본안 판단 전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이 효력을 유지한 채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음. 즉, 동일한 ‘연령 확인’이라도 법 설계의 범위·대상·수단의 침해 정도에 따라 사법 판단의 속도와 결과가 엇갈리고 있음(Pettus & Gates, 2025, 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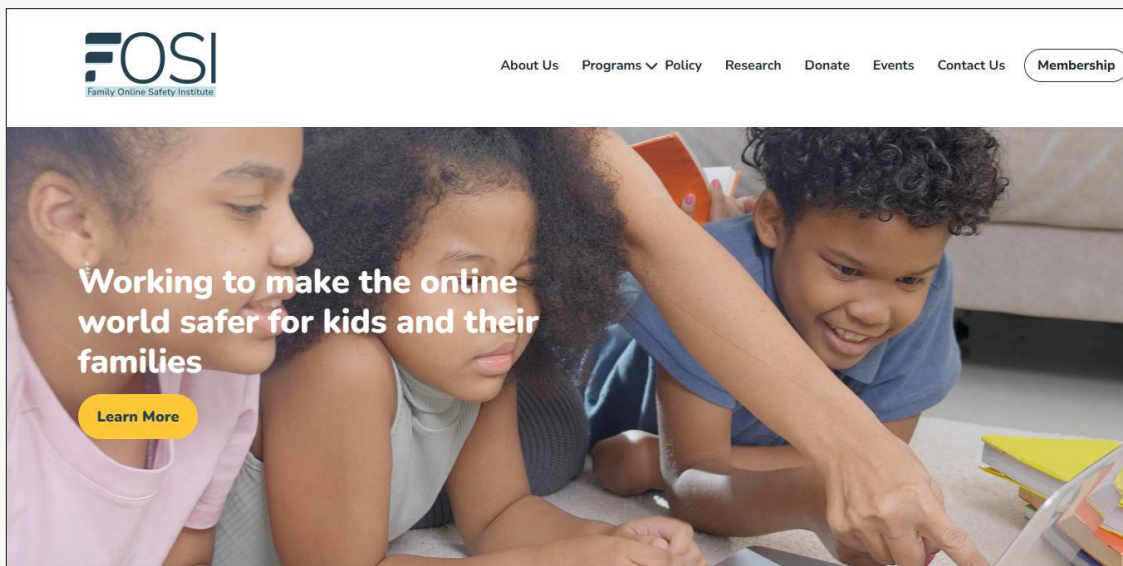
- 이처럼 주 차원의 규제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동시에 사법 심사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임. 이 때문에 미국의 청소년 SNS 규제 논의는 단순히 ‘금지/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설계 규제가 헌법적 기준(최소침해, 과잉금지, 익명표현 보호 등)을 통과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1)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URL: <https://ag.ny.gov/press-release/2025/attorney-general-james-releases-proposed-rules-safe-kids-act-restrict-addictive>

- 이와 함께 연령 확인 제도는 별도의 논쟁을 낳고 있음. 연령 인증은 사실상 신분증 제출이나 생체 정보 활용을 수반할 수 있기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VPN 사용, 부모 계정 공유, 해외 플랫폼 이용 등 다양한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이러한 맥락에서 최소연령을 설정해 직접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법적 ·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Chayka, 2025. 08. 06).
- 한편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별도로, 사법적 집행과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권고, 민간 및 학교 기반 대응을 병행하는 분산적 구조를 발전시켜 왔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근거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보건총감 권고는 플랫폼의 자율적 안전 조치와 부모 지원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즉, 강력한 단일 입법 규제보다는 법 집행, 정책 권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참여가 결합된 다층적 대응 방식이 특징적임.

- 예를 들어,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 Parent-Teacher Association)의 'PTA Connected'를 비롯해 커몬 센스 미디어(Common Sense Media)와 가족 온라인 안전 연구소(FOSI,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등은 연령별 가이드와 부모 대상 디지털 페어런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시민성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교육 및 지원 체계는 규제를 대체하기보다는, 부모의 이해와 개입 역량을 보완하는 실천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림 1 | FOSI(가족온라인안전연구소) 웹사이트



- 종합하면, 미국은 청소년 온라인 위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매우 높으나,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보호 전통으로 인해 강력한 이용 금지 중심의 규제 모델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존재함.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전면적 금지보다는 규제 집행과 정책 권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우회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주(州) 차원에서는 최소연령을 설정해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입법 실험이 반복되고 있으나, 상당수 법안이 사법적 심사를 거치며 효력이 정지되거나 제동이 걸리고 있음. 그 결과 미국의 대응 모델은 중앙집중적 통제 체계라기보다는 입법 실험과 사법 심사, 부모 · 학교 · 민간 기반 대응이 병행되는 분산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헌법적 제약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음.

III. 영국: 플랫폼 '주의의무'와 사전적 위험관리 중심의 온라인 안전 규제

- 영국의 아동 ·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는 '사용 시간 제한'이나 '학교 내 스마트폰 통제'보다, 플랫폼의 추천 구조와 설계 메커니즘이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됨.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2017년 14세 소녀 몰리 러셀(Molly Russell) 사망 사건임. 이후 관련 조사에서 자해 및 자살 관련 콘텐츠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연쇄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면서, '알고리즘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됨. 이 사건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나 부모의 감독 부족이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구조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Crawford, 2023.11.29.).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23년 10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발효됨.
- 「온라인 안전법」은 규제의 초점을 학교나 개인 이용 행위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에 두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하는 체계를 도입하였음. 법은 규제 대상을 '사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s)'와 '검색 서비스(search services)'로 구분하고, 특히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함.
 - 사용자 간 서비스에는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게임 · 앱 등 이용자 상호작용과 콘텐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 의무가 적용됨
 - 반면 검색 서비스는 정보 탐색과 노출 구조를 중심으로 위험 관리 의무가 설계되며, 구글과 같은 대형 검색엔진이 이에 해당함.
-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 · 청소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 플랫폼에 다양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불법 · 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은 아동 ·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법률상 유형화하고(제61조 · 제62조), 위험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콘텐츠는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primary priority content)'와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content)'로 구분됨.

-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에는 음란물, 자살 · 자해 조장 · 미화 콘텐츠,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이는 최 우선적 차단 대상으로 간주됨.
- ‘우선순위 콘텐츠’에는 인종 · 종교 · 성별 · 성적지향 · 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괴롭힘, 심각한 폭력 묘사, 위험한 도전 · 스톤트 행위 조장, 약물 자가 투여 조장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연령 확인 결과에 따라 접근 제한 또는 노출 축소 조치가 적용됨
- 이와 함께 플랫폼은 아동 ·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신고 ·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0조 · 제31조),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아동접근평가의무’와(제35조 · 제36조), 접근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서비스 내 콘텐츠 및 알고리즘 구조가 초래할 위험을 분석 · 완화하는 ‘아동위험평가의무’를 부담함(제11조 · 제28조).
- 영국 규제의 핵심은 사후 삭제가 아니라 ‘사전적 위험관리’에 있음. 다시 말해,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하며, 접근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 · 완화하는 조치를 설계해야 함.
 - 이 평가는 추천 알고리즘, 연쇄 노출 구조, 자동재생 · 무한 스크롤 · 푸시 알림과 같은 체류 시간 확대 설계, 신고 · 차단 기능의 접근성 등 플랫폼 구조 전반을 포괄함.
 - 즉, ‘문제 콘텐츠 제거’보다 ‘위험을 발생시키는 설계 구조의 점검과 수정’을 규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이러한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영국은 독립 감독기관인 오프콤(Ofcom)에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함. 오프콤은 플랫폼의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연령 보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과징금은 1,800만 파운드(약 353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 압력을 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즉, 단순한 권고나 자율 규제에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 집행을 전제로 한 모델임.
- 사전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라인 안전법」은 ‘연령 보증(age assurance)’ 제도를 도입함. 이는 단순한 자기신고를 넘어 디지털 신분증, 얼굴 연령 추정 기술,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신뢰 가능하게 확인하거나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장치임.
 - 최근 오프콤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8-14세 아동 · 청소년이 한 달 안에 포르노 사이트 혹은 플랫폼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3%는 8-9세로 가장 어린 나이를 차지하였고²⁾, 청소년의 16%는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접했음³⁾. 따라서 플랫폼들로 하여금 연령 보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 · 청소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에

2) Ofcom. URL: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protecting-children/age-checks-for-online-safety--what-you-need-to-know-as-a-user>

3) GOV.UK. URL: <https://www.gov.uk/government/news/keeping-children-safe-online-changes-to-the-online-safety-act-explained>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온라인 안전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아동의 SNS 접근 연령과 중독적 설계 요소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아동의 SNS 이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무한 스크롤', '연속 접속 보상'과 같은 체류 시간 확대 기능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의 절차에 착수함. 이는 기존 법이 위험 평가와 플랫폼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이해됨(Stacey & Milmo, 2026.02.26).

- 현재 상원에는 아동 복지 및 학교 관련 법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영국이 플랫폼 구조 책임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연령 접근 제한과 중독성 설계 통제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법률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학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안전한 인터넷 센터(UK Safer Internet Centre)와 범정부·민관 협의체인 인터넷 안전 위원회(UKCIS,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는 부모 대상 온라인 안전 가이드와 플랫폼별 기능 설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작·배포함.

- 인터넷 안전 이슈 대응 비영리단체인 Internet Matters, 영국 최대 아동 보호 단체인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그리고 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Parent Zone 등과 협력하여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 설정 방법과 대화 가이드를 제공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Safer Internet Day'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안전 논의를 일회성 통제가 아니라 지속적 가정 내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음.

표 1 | '안전한 스크린 환경을 위한 보건 전문가 연대'의 연령별 스크린 사용 가이드

출생~24개월	원칙적으로 스크린 사용 금지	영상통화(video chatting)를 제외한 스크린 노출은 권장되지 않음. 언어 발달 지연,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 강조
만2~5세	하루 최대 30분 이내	짧고 선별된 콘텐츠만 허용. 스마트폰보다 태블릿·TV 등 큰 화면 사용 권장. 보호자와 함께 보며 대화하는 공동 시청(co-viewing) 강조
만6~10세	평일 1~2시간 이내, 주말 최대 2시간	스크린 사용이 수면·식사·신체활동을 침해하지 않는지가 판단 기준. 식사 중·취침 전 스크린 사용 금지, 가족과의 스크린 없는 시간 확보 권장
만11~17세	평일 1~2시간, 주말 최대 3시간 권고(참고 기준)	사용 시간보다 영향 중심 평가강조. SNS·숏폼 영상의 반복 소비가 집중력·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의
전 연령 공통	취침 전 최소 1시간 스크린 사용 금지	'수면 건강' 핵심 원칙. 침실 내 스마트폰·태블릿·컴퓨터 비치 금지, 알람시계 사용 권장

- 종합하면, 영국 모델은 규제의 출발점을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플랫폼 구조'에 두고, 법적 의무 · 강력한 감독 및 집행체계 · 연령 보증 · 공중보건 지침 · 부모 지원 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온라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다만 연령 보증의 개인정보 문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산업 부담, 집행 가능성 등은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용 환경 변화에 방점을 둔 규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IV. 프랑스: 국가 주도의 연령 기준 설정과 디지털 이용 환경 재구성

- 프랑스는 아동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크린 과다 노출 문제를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가정의 통제 실패로 보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재설계해야 할 '생활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해 왔음.
 - 공중보건국(Santé Publique France)과 미디어메트리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일일 평균 스크린 노출 시간은 약 3시간 수준이며, 코로나19 봉쇄기에는 6~12세 아동의 노출 시간이 7시간에 이르렀다는 결과도 제시됨.
 - 스마트폰 최초 보유 연령이 평균 9세 전후로 낮아지고, 수면 장애 · 집중력 저하 ·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공중보건 의제로 부상하면서 부모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지적됨(Bousquet-Bérard & Pascal, 2024)
 - 부모의 절반가량이 디지털 생활 지도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에 따라, 규제와 부모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공식화됨(Labo Societe numerique, 2022.02.24.). 이는 이후 연령 기준 설정, 학교 규칙 강화, 플랫폼 책임 확대 논의로 이어지는 정책적 출발점이 됨.
- 이러한 문제 인식은 연령별 스크린 이용 원칙을 보건 · 교육 정책 및 법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됨. 예컨대 교육부는 발달 단계에 따라 접근 가능성과 사용 범위를 차등화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프랑스 교육부, 2025.09.08).
 - 만 3세 미만은 발달 저해 우려를 근거로 스크린 노출을 전면 금지하며, 2025년 7월부터는 영유아 보육시설 내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가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됨.
 - 만 3~6세는 성인 동반 하에 교육적 목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상적 · 신체적 놀이를 우선하도록 권고함.
 - 만 9~12세는 개인 스마트폰 제공을 지양하고 SNS 이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인터넷 사용 시 부모의 능동적 감독을 전제로 함.
 - 만 12~15세는 제한적 자율성을 인정하되 SNS 접근은 여전히 제한하고, 15세 이후부터 점진적 자율성을 부여함.
 - 이러한 기준은 보건 · 교육 차원의 생활 규범에 해당하며, 이후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연령 기준과 병행하여 작동함.

- 학교 공간에서는 연령 원칙이 법적 규제에 구체화되어, 학생과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으로 발전함. 일례로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L.511-5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2024~2025학년도 도입된 '디지털 쉼표(pause numérique)' 정책은 등교 후 학생의 기기를 수거·봉인해 수업 종료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는 사용 시간 조절이 아니라 학습 공간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202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 전면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 의제로 제기됨. 그 주요 배경은 학습권 보호와 생성형 AI의 오남용 대응, 시험 부정 방지 등으로 알려짐. 다만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 학생 자율성 침해 논란 등은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음.
- 플랫폼 차원에서는 2023년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및 온라인 혐오 방지에 관한 법률(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을 통해 '디지털 성년(majorité numérique)'을 15세로 설정함. 즉,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자녀 계정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동의의 최소 연령을 명확히 설정한 조치임. 그러나 자기신고식 연령 고지의 한계와 우회 이용 문제로 인해, 형식적 동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됨.
- 연령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는 성인물 사이트 규제 경험을 확대 적용함. 2020년 7월 30일 법률을 근거로 연령 확인이 불충분한 성인 사이트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접근 차단이 가능해졌으며, 2024년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를 위한 법률(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에 따라 감독기관 ARCOM이 미성년자 접근이 가능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해 직접 제재 및 접속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단순 체크박스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연령 인증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실제 차단과 재정적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됨⁴⁾.
 - 이는 연령 제한을 선언적 규범에서 집행 가능한 통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이러한 집행 모델은 최근 SNS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2026년 1월 26일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⁵⁾.

4) 이 재정 제재는 최대 € 150,000 또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제외 전 세계 매출의 2%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반복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제재는 한층 강화되며, 최대 € 250,000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이 법안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음.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법안 내용 출처: Vie Publique(2026.01.27.). URL: <https://www.vie-publique.fr/loi/301799-protoger-les-mineurs-risques-des-reseaux-sociaux-proposition-de-loi>

- 해당 법안은 플랫폼에 연령 확인 도구 도입을 의무화하고, 15세 미만 신규 계정 개설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며, 기존 미성년 계정에 대한 정비 조치도 요구함.
- 이는 부모 동의를 중심으로 했던 2023년 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플랫폼 자체에 연령 확인과 접근 통제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됨.
- 입법 과정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특정 기업이 아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범 형태로 조정됨.
- 한편, 2025년 12월 상원에서 1차 통과된 「청소년의 스크린 노출 위험 및 소셜미디어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⁶⁾은 보다 포괄적인 예방 · 교육 중심 접근을 제시하고 있음. 이 법안은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고, 13~16세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최소 연령 체계를 명확히 하며, 플랫폼에 강력한 기술적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함. 동시에 보건 · 의료 · 영유아 · 교육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위험 및 생성형 AI 사용 위험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 대상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함.
 - 모든 미성년자에게 디지털 위험에 대한 정기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결 기기(스마트폰 · 태블릿 등)의 광고 및 포장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됨.
 - 또한 학교는 교칙에 스마트폰 비사용 조직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디지털 침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됨.
 - 이 법안은 규제와 함께 공중보건 · 교육 · 광고 정책을 결합한 다층적 대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을 확장하는 성격을 지님.
- 이처럼 프랑스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모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음.
 - 2022년 프랑스 정부는 「아동 · 청소년의 합리적인 스크린 이용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부모 대상 정보 제공, 학교 기반 미디어 교육, 현장 지원 인프라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함.
 - 정부 포털 '내 아이를 지켜요(Je protège mon enfant)'는 연령별 위험 신호, 플랫폼 설정 방법, 상담 및 신고 경로를 등을 통합 제공하는 공적 지원 도구로 기능함
 - 이는 규제가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완적 구조임.

6) 이 법안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음.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jeunes des risques liés à l'exposition aux écrans et des méfaits des réseaux sociaux, et à les accompagner vers un usage raisonné du numérique(스크린 노출로 인한 위험과 소셜미디어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절제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법안 내용 출처: Vie Publique(2025. 12. 19). URL: <https://www.vie-publique.fr/loi/301453-protéger-les-jeunes-des-ecrans-et-reseaux-sociaux-proposition-de-loi>

그림 2 | 정부 포털 '내 아이를 지켜요(Je protège mon enfant)' 웹사이트



- 이처럼 프랑스 모델은 법률을 통해 이용 가능 연령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 공간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플랫폼 차원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 중심의 집행 체계와 부모 지원 정책을 결합한 '공적 환경 재설계'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는 경로와 노출되는 콘텐츠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용 환경 중심 규제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연령 확인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유럽 연합(EU) 법체계와의 정합성,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문제는 이러한 규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음.

V. 호주: 공중보건 의제화와 행정 집행 중심의 플랫폼 규제

-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위험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중보건 및 아동 안전 의제로 규정해 온 대표적 국가임. 온라인 괴롭힘, 이미지 기반 성적 침해, 폭력 영상 확산, 아동 성착취물 노출 등은 단순한 이용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해로 간주되며, 이러한 위험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확산 구조를 통해 빠르게 증폭된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핵심 전제가 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호주는 '청소년이 왜 오래 사용하는가'라는 질문보다 '플랫폼 환경에서 어떤 위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해 왔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구체화되었음. 이 법은 사이버 괴롭힘, 이미지 기반 침해, 아동 성착취물 등 중대한 온라인 위해에 대해 삭제 명령 및 차단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 유해 콘텐츠에 대한 탐지와 신속한 대응 의무를 부과하였음. 특히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안전국 이 플랫폼에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6조). 집행의 중심에는 독립 규제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명령, 차단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⁷⁾. 이는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적 책임과 행정 집행을 명확히 한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이러한 집행 중심 규제의 연장선에서, 2024년 11월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소셜미디어 최소연령)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을 통과시켜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연령을 16세로 명시하였음. 이는 세계 최초로 법률에 소셜미디어 최소연령을 규정한 사례로,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이 일정 범주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이는 콘텐츠 차단 중심 접근이 아니라, 계정 기반 접근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구별됨. 규제의 책임은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미이행 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5년 12월부터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 · 유지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틱톡, 메타, 인스타그램, 스냅챗, X, 유튜브 등 추천 · 상호작용 구조를 갖춘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됨.
 -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 · 유지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최소연령 제도는 연령 확인 기술의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긴장을 동반하고 있음. 연령을 신뢰 가능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과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며, 이는 감시 확대 및 데이터 오남용 우려를 야기함. 또한 부모 명의 계정 사용, 해외 플랫폼 우회 이용 등 회피 가능성 역시 현실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연령보장 기술 시범사업(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정확성과 위험성을 비교 검토함.
 - 온라인안전국은 연령 인증 기술이 차별, 오인식, 데이터 과잉 수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함(Taylor, 2025. 08. 31).

7) eSafety Commissioner. URL: <https://www.esafety.gov.au/about-us/what-we-do>

- 이에 따라 최소연령 정책은 강력한 국가 개입 사례이면서 동시에 권리와 기술의 균형 문제를 드러내는 실험적 제도로 평가됨.

- 플랫폼 규제와 병행하여, 호주는 생활 환경 차원의 개입과 학교 규제를 통해 일상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음. 호주 보건당국의 「24시간 활동 가이드라인」은 스크린 사용을 단순히 줄여야 할 시간 변수로 보지 않고, 신체 활동 · 좌식 행동 · 수면과의 균형 속에서 관리해야 할 요소로 제시함. 이는 스크린 시간을 독립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생활 리듬 전체를 조정하는 접근임.

표 2 | 호주 정부의 연령대별 스크린 사용 시간 가이드라인(레크리에이션 · 오락 목적 기준)

만2세 미만	원칙적으로 스크린 사용 권장하지 않음(영상통화 제외)
만2-5세	하루 최대 1시간 이내
만5-17세	하루 최대 2시간 이내(학업 목적 제외)

※ 모든 연령대에서 “적을수록 좋음(as little as possible)” 원칙이 반복적으로 강조됨.

- 이와 더불어 학교 차원의 휴대전화 제한도 광범위하게 도입됨. 예컨대 빅토리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등 주요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정책 목적은 수업 집중도 향상, 사이버 괴롭힘 예방, 대면 상호작용 회복 등임. 다만 학업 성취 및 정신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함.
-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는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안전 체계임. 온라인안전국은 단순한 집행 기관을 넘어, 피해 구제 · 플랫폼 감독 · 부모 지원 · 학교 교육 · 대중 인식 제고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온라인 안전 허브로 기능함. 이는 처벌 중심 모델이라기보다, 신속한 집행과 예방 ·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다층적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이미지 기반 성적 침해, 성착취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해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플랫폼에 삭제 ·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제재가 가능함.
 - 부모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디지털 이용 조언, 플랫폼 안전 설정 방법, 스크린 시간 관리 전략, 온라인 괴롭힘 대응 가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정 화면을 기준으로 한 실천적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다언어 자료, 무료 웨비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배경 가정과 취약 집단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함.
 - 학교를 위해 「온라인 안전 교육 우수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온라인 안전을 디지털 시민성 · 사회정서학습 · 비판적 사고 교육과 연계하도록 권고함. 이는 호주 교육과정 · 평가 · 보고청(ACARA)의 국가교육과정과 연동되어, 온라인 안전을 법교과 역량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형성함.

- 종합하면, 호주는 플랫폼 책임의 법제화, 계정 기반 최소연령 제한, 학교 환경 재구성, 생활 리듬 관리, 그리고 온라인안전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위험을 개인의 자기조절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위해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한 국가 개입형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음. 동시에 연령 확인의 실효성,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규제 우회 가능성이라는 정책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VI. 각국의 스마트폰·SNS 규제 비교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는 서로 다른 법제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 SNS 규제를 설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규제의 초점을 '이용자의 행위 통제'가 아니라 '위험을 생성 · 증폭시키는 디지털 환경'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함.
 - 미국은 알고리즘 추천 구조와 중독적 설계 요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를 전개하는 한편, 수정헌법에 따른 사법 심사가 병행되는 분권적 구조 속에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조정해 나가고 있음.
 -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서비스 유형별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연령 보증 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플랫폼의 사전적 위험관리 책임을 체계화하였으며, 감독기관인 오프콤(Ofcom)을 중심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함.
 - 프랑스는 15세 디지털 성년을 법제화하고 학교 공간에서의 스마트폰 제한과 연계하는 등 연령 기준과 생활 · 교육 환경을 결합한 국가 주도형 재설계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 호주는 16세 소셜미디어 최소연령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중심으로 삭제 · 차단 명령과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집행 중심 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책임을 강하게 관철하려는 특징을 보임.
- 이들 국가의 사례는 청소년 과의존과 온라인 위해를 단순한 '사용 시간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본 설정값, 상호작용 유도 설계 등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이 결합된 환경적 위험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이는 '행위 통제' 중심 접근에서 '환경 책임'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책임의 위치를 개인과 가정에서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구조로 이동시키는 정책적 재배치를 보여줌.
- 동시에 국가별 제도적 조건과 집행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미국은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광범위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반복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법-소송-집행정지가 순환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영국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권리 보장 원칙을 전제로 연령 보증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오프콤을 중심으로 사전적 위험관리 의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구축함. 프랑스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GDPR)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적용을 받는 구조 속에서 연령 확인과 접근 통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례성 원칙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아울러 호주는 강력한 행정 집행 권한과 고액 과징금 체계를 통해 플랫폼 책임을 직접적으로 관철하는 집행 중심 구조를 발전시켜 왔음. 즉, 동일한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 아래에서도 헌법적 제약의 강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의 관계, 감독기관의 권한 범위, 집행 강도 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 | 해외 주요국 아동·청소년 스마트폰·SNS 규제 비교

항목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문제 인식의 출발점	-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중독적 알고리즘 문제 제기	- 물리 러셀 사건 이후 플랫폼의 추천·확산 구조 책임 강조	- 디지털 과노출은 '이용 환경' 문제로 인식. - 국가가 환경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	- 사이버폭력·성착취 등 구조적 온라인 위해 → 공중보건 의제화
핵심 법·제도	- KOSA(연방, 2024년 상원 통과·입법 논의 중) - SAFE for Kids 관련 주(州) 입법(뉴욕 등)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 디지털 성년(15세) 제도(2023) - 「디지털 공간 보안 및 규제법」(2024)	-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2021) - 2024년 「온라인안전법」 개정: 소셜 미디어 최소연령
연령 기준	- 연방: 17세 미만 보호 - 주별: 14~18세 상이	- 법상 18세 미만 보호 - 16세 미만 SNS 제한 추가 논의 중	- 15세 미만 SNS 가입 시 부모 동의 - 15세 미만 접근 제한 강화 입법 추진	-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유지 금지(법제화, 집행 단계)
플랫폼 의무	- 알고리즘 추천 제한 옵션 제공 - 부모 통제 도구 제공 의무	- 서비스 유형별 주의의무(duty of care) - 아동 접근·위험 평가 의무	- 연령 확인 의무 강화 - 성인물 규제 경험을 SNS로 확장	- 합리적 연령 차단 조치 의무 - 삭제·차단 명령 이행 의무
유해 콘텐츠 규제 방식	- 정신건강 위해 및 중독적 설계 요소 중심 접근	- '주요 우선순위'·'우선순위' 콘텐츠 단계별 구분	- 연령 기준 중심 접근 통제	- 불법·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차단 중심
연령 확인 방식	- 주별 상이: 신분증, 부모 동의 등	-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보증(age assurance)' 요구	- 단순 체크박스 불인정 기술적 인증 요구(성인물 규제 경험 기반)	- 합리적 조치 의무 - 디지털 ID·얼굴 연령 추정 등 허용
집행 구조	- 연방·주 분권 구조 - 사법 심사를 통한 규제 범위 조정	- 오프컴 중심 강한 감독·과징금 권한	- ARCOM 중심 차단·행정 제재 권한	- 온라인안전국 중심 강한 행정 집행
제재 수준	- 과징금, 민사 소송 가능 - 위헌 소송 빈번	-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의 10%	- 차단 명령+매출 연동 과징금	- 최대 4,950만 AUD 과징금
학교·교육 정책	- 주·학교별 규정 상이	- 교육부 가이드라인 기반 학교별 자율 규정에 따른 스마트폰 제한	- 초·중학교 스마트폰 사용 법적 금지 - '디지털 침묵' 정책 운영 - 연령별 스크린 가이드 제시	- 온라인 안전 교육 프레임워크 - ACARA 교육과정 연계
최근 확장 동향	- 알고리즘 책임 강화 논의 지속	- 16세 미만 SNS 추가 제한 검토 - 중독적 설계 요소 규제 논의	- 15세 미만 SNS 접근 제한 강화 - 학교 교육·부모 지원 제도화 확대	- 소셜 미디어 최소연령(16세) 본격 시행

- 한국 역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SNS 중독,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정책 논의는 여전히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같은 행위 통제 장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

는 교실 내 질서 회복이라는 제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플랫폼의 추천 구조와 상업적 체류 시간 확대 전략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적 대응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국내 주요 SNS가 대부분 글로벌 사업자라는 점, 국제 통상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규제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영역임.

-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정책은 위험 개념과 책임 구조를 재정렬하는 방향에서 점진적 · 구조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가능함.

- 첫째, 플랫폼 책임의 제도적 구체화가 요구됨.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본 보호 설정(default safety setting)의 명확화,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조정 가능성 확보, 자동 재생 · 무한 스크롤 등 체류 시간 확대 설계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연령 확인 체계의 실효성 점검 등은 환경 중심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음.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임.
- 둘째, 연령 기반 보호 장치는 부모 지원과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디지털 페어런팅 지원을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연령별 위험 신호, 플랫폼 설정 방법,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전략, 신고 · 상담 경로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공적 지원 인프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부모의 조율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 셋째,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 사용 금지나 규칙 위반 관리에 머무르기보다, 알고리즘 추천 구조, 위험 콘텐츠 확산 메커니즘, 플랫폼의 수익 모델과 데이터 수집 방식 등을 학습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교육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교사 연수와 표준화된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예방과 사후 대응을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이버폭력, 유해 콘텐츠 노출, 정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담-증거 확보-플랫폼 조치-전문기관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협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사례는 강력한 최소연령 제한이 수정헌법에 의해 제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영국과 프랑스 역시 연령 보증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EU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연령 확인, 알고리즘 제한, 계정 기반 접근 통제 등은 익명성, 데이터 최소화 원칙,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합성과 국제 규범을 고려한 단계적 설계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청소년 SNS ·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은 단순히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조정하고 책임의 배치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는 강력한 규제 그 자체보다, 플랫폼 책임 · 집행 구조 · 부모 지원 · 교육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적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 역시 국내 미디어 환경,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체계, 행정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Bousquet-Brard, C., & Pascal, A. (2024). Enfants et écrans. la recherche du temps perdu. <https://www.elysee.fr/admin/upload/default/0001/16/06a9854b34d98bb3e4fbf72b2b28ed3b0dd601a1.pdf>
- Chayka, K. (2025, August 6). The Internet wants to check your I.D.: Age verification systems pose privacy risks.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culture/infinite-scroll/the-internet-wants-to-check-your-id>
- Crawford, A. (2023, November 29). Molly Russell: Tech firms still failing after teenager's death, says father. BBC. <https://www.bbc.com/news/uk-67556756>
- Kramon, C. (2024, October 1). Federal judge blocks Georgia law requiring age verification for social media accounts.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51b4ce108f0d22adadc50d50e0392dd4>
- Labo Socié t Num rique. (2022, February 24). Parentalité num rique : entre usages des enfants et besoins d'accompagnement des parents. Labo Socié t Num rique. <https://labo.societenumerique.gouv.fr/fr/articles/dossier-parentalite-numerique-entre-usages-des-enfants-et-besoins-daccompagnement-des-parents/>
- Pettus, E. W., & Gates, S. (2025, July 18). Social media age verification law can take effect, court says. Mississippi Today. <https://mississippitoday.org/2025/07/18/social-media-age-verification-law/>
- Ruiz, N., Molina Le n, G., & Heuer, H. (2024). Design frictions on social media: Balancing reduced mindless scrolling and user satisfaction. arXiv.
- Stacey, K., & Milmo, D. (2026, February 26). UK considers social media ban for under-16s as ministers launch consulta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6/feb/26/uk-social-media-ban-under-16s-consultation-keir-starmer-backing>
- Taylor, J. (2025, August 31). Trial of tech that could be used to keep Australian under-16s off social media finds some errors 'inevitabl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aug/31/age-assurance-technology-trial-report-australia-under-16-social-media-ban-some-errors-inevitable>
- Villarreal, D. (2025, May 15). Kids Online Safety Act reintroduced in Senate; advocates fear it'll block LGBTQ content online. LGBTQ Nation. <https://www.lgbtqnation.com/2025/05/kids-online-safety-act-reintroduced-in-senate-advocates-fear-itll-block-lgbtq-content-online>
- Weigle, P. E., & Shafi, R. M. A. (2024).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Current Psychiatry Reports, 26, 1-8.
- 프랑스 교육부. (2025, September 8). Publication du guide "Bien grandir avec les écrans : des repères pour chaque âge". <https://www.education.gouv.fr/publication-du-guide-bien-grandir-avec-les-ecrians-des-reperes-pour-chaque-age-463107>

미디어 이슈 리포트

2026년 2호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남정호

기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3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744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6

〈미디어 이슈 리포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